정보보호 사전점검 업무지침

제정 2013. 6. 27. 개정 2013.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5,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이하 '사전점검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이 정보보호 사전점검(이하 '사전점검'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보보호 사전점검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용어는 사전점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신청기관"이란 사전점검을 받고자 진흥원에 신청한 업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 2. "신청자"란 수행인력 자격을 신청하여 인증 받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3. "수행인력"이란 정보통신 망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만족하고, 사전점검 고시 제16조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4. "선임 수행인력"이란 수행인력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점검팀의 일원으로 사전점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 5. "수석 수행인력"이란 선임 수행인력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사전점검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점검팀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 6.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란 신청자에 대한 수행인력 자격의 인증, 유지, 승급, 정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 7. "사전점검 점검팀"이란 사전점검 수행을 위해 정보보호 사전점검 고시 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갖춘 내·외부의 사전점검 수행인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2장 사전점검 업무

제4조(업무 범위) 진흥원은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전점검 신청 접수
- 2. 사전점검 수행 계약 체결
- 3. 사전점검 수행
- 4. 사전점검 확인증 발급 및 관리
- 5. 사전점검 관련 자문
- 6. 사전점검 수행인력 관리
- 7. 기타 사전점검 수행에 관련된 업무

제3장 사전점검 신청 접수 및 계약

제5조(사전점검 신청)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 1. 사전점검 신청서
- 2.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3. 정보보호 사전점검 범위서
- 4. 사전점검 수수료 할인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신청서류의 접수) ① 진흥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첨부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신청기관은 진흥원의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점검 수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진홍원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진 홍원은 신청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해당 신청기관의 사전점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진흥원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미 해당 사전점검을 위하여 사용된 신청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신청기관 준비사항 확인) ① 진흥원은 사전점검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점검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준비가 미비하여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청기관이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사전점검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진흥원은 신청이 무효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해당 신청기관의 사전점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 계약 체결) ① 진흥원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점검 수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다.

- ② 사전점검 수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입찰 등에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계획 제출을 위한 계약 체결일 경우 관련 입찰 탈락 시계약이 자동 취소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전점검 계획의 통보) 진흥원은 신청기관과 사전점검 수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전점검 계획을 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제4장 사전점검 수수료

- 제10조(수수료의 산정) ① 사전점검 고시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신청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이루어진다.
 - 1. 신청비는 진흥원의 사전점검과 관련된 사전점검 신청 접수 및 계약, 사전점검 심사계획서 작성 및 발송 등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직접인건비는 사전점검에 투입되는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별표 제1호 점검일수와 인건비의 곱으로 산정한다. 인건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에 따른다.
 - 3. 직접경비는 사전점검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사전점검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정한다.
 - 4.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 X 120%)로 산정한다.
 - 5. 기술료는 최대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40%]로 산정한다.
- 제11조(수수료의 조정) 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사전점검범위 등을 고려하여 점검일수, 수행인력, 수수료를 신청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전점검수수료 및 신청비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단,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정보보호대상에서 대상(수수료 면제), 우수상(수수료 7/10 경감), 특별상(수수료 1/2 경감)을 수상하고 수상한 날부터 2년 이내 신청한 사업자 또는 기관
 - 2.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미만으로 인정된 사업자 또는 기관(수수료 1/2 경감)
 - 3. 정보통신 망법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기관(수수료 1/2 경감)
 - 4. 사전점검을 수행한 기관 중 추가로 사전점검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기관(추가 신청한 수수료 1/2 경감)
 - 5. 국가적 중요 사업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1/2 경감) 및 신청비 면제

- 제12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납부 시기는 사전점검 수행계약 시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신청기관은 사전점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점검 수수료를 진홍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홍원은 사전점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입찰 등에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계획 제출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은 낙찰된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5장 외부 수행인력 자문비 지급

- 제13조(수행인력 자문비 지급) ① 진흥원장은 외부 수행인력의 사전점검 수행 활동에 대하여 별표 2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문비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전점점 수행에 따라 발생한 교통비 및 출장비는 진흥원의 출장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전점검 확인증 발급 및 관리

- 제14조(사전점검 확인중 발급) 진흥원장은 사전점검 점검팀으로부터 사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관의 사전점검 수행이 정보통신 망법 제4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5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보호 사전점검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전점검 확인증 관리)** ① 진흥원은 발급된 사전점검 확인증 번호, 발급일, 사전점검 범위, 결과보고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전점검 확인증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호 사전점검 확인증 추가발급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전점검 수검을 받은 자가 주소, 업체명 등 확인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보호 사전점검 확인증 변경신청서를 진홍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수행인력 자격 요건

- 제16조(수행인력 자격 요건) ① 수행인력은 정보통신 망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수행인력은 사전점검 고시 제16조의 사전점검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 시 70%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17조(선임 수행인력 자격 요건) 선임 수행인력은 제16조의 수행인력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사전점검을 4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때 참여일 수의 합은 20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전점검 경력은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로 한다.
- 제18조(수석 수행인력 자격 요건) 수석 수행인력은 제17조의 수행인력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사전점검 점검팀장으로 3회 이상 사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일 수의 합은 15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전점검 경력은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로 한다.

제8장 수행인력의 자격 신청 및 관리

- 제19조(신청 서류 접수) ① 수행인력 최초 신청자가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지 제4호 서식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신청서
 - 2. 자격증 사본(필요시)
 - 3. 별지 제5호 서식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 상세 재직증명서 등 경력 관련증빙 서류
 - 4.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필요시)
 - ② 수행인력 자격 승급 신청자가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지 제8호 서식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승급 신청서
- 제20조(신청 서류 심사) ① 진흥원은 수행인력 자격신청자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신청서류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자격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 ②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자격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수행인력 자격 심의) ① 진홍원은 수행인력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는 신청서류를 토대로 수행인력 신청자가 사전점검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자격을 심의한다. 주요 심의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사전점검원칙, 절차 및 기법, 전무분야, 관련법규 등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
 - 2. 학력 및 업무경력, 사전점검 수행 경력, 교육 등의 자격기준 만족 여부
 - ③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는 서류 검토만으로 불충분할 경우 신청자 면접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

- 행인력 자격 심의회 의견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 결과 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 ⑤ 별지 제9호 서식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에서 과반수 찬성해야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수행인력 등록 및 관리) ① 수행인력 자격 심의를 통과한 자는 수행인력 풀에 등록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위촉장을 수여한다. 수행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은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수행인력 풀에서는 수행인력의 전문분야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본 전문분야는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신청서에 기재한 전문분야를 근거로 하며, 수행인력이 전문분야를 수정 또는 추가하고 싶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수행인력 자격 유지 및 승급

- 제23조(수행인력 자격 유효기간) 수행인력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진흥원에서 수행인력 자격의 유지 및 승급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재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24조(수행인력 자격 유지) 수행인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수행인력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유효기간 내 최소 6일 이상 사전점검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한다.
 - 2. 수행인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에 매년 8시간 이상 참석하여 야 한다. 다만, 진흥원에서 수행인력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대체 교육에 참석하여 그 증빙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제25조(수행인력 자격 등급 변경) ① 수행인력은 제17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선임 수행인력으로 자격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선임 수행인력은 제18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 수석 수행인력으로 자격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6조(수행인력 자격 유지 및 등급 변경 확인) ① 진흥원은 수행인력의 자격 유효기간 내 자격 유지 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행인력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자격 유지 경력 및 교육은 자격 기준 검증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 ②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른 수행인력 자격 등급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수행인력 의무 및 역할

제27조(수행인력 의무) 수행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행인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2. 수행인력으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해야 한다.
- 3. 사전점검과 관련된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 4. 사전점검의 수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관련 법령 또는 신청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5. 수행인력은 사전점검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모든 압력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제28조(수행인력 역할) ① 수행인력은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사전점검 수행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 ② 사전점검 점검팀의 팀장은 수석 수행원 또는 선임 수행원 중 진흥원에서 지정한다. 팀장은 사전점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사전점검 수행 계획, 수행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업무를 총괄하고 점검팀을 대표한다.
- 3. 점검팀원 선정을 지원한다.
- 4. 점검팀원의 업무를 할당한다.
- 5. 점검팀원이 작성한 보안서약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 6. 사전점검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 7.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신청기관 및 진흥원에 제출한다.
- ③ 점검팀원은 사전점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할당된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한다.
- 2. 점검팀장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제11장 수행인력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제29조(자격 정지) ① 수행인력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수행인력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수행한 경우로서 사전점검 수행에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2. 수행인력으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
- ② 수행인력의 자격정지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은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 후 해당

수행인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자격 취소) ① 수행인력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수행인력 자격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2.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사전점검 수행에 참여하지 않고 수행인력이 아닌 자를 대리 수행토록 한 경우
- 4. 수행인력 자격 유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5. 사전점검의 수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관련 법령 또는 신청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 한 경우
- 6. 사전점검과 관련된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수행인력 자격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최초 자격신청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정보보호 수수료 산정기준

1. 사전점검 수수료 산정

2. 점검일수

1) 점검일수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산출 하거나, 아래의 수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점검일수 = A ×
$$\left(\frac{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사업비보정금액}{1억원}\right)^{B}$$
 ※ 15 < A < 25 ※ 0.5 < B < 0.7

- 2) 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사업비 보정금액 산출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산출 하거나,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대상 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대상 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0
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0.456
다) 지식정보자원ㆍ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라) 기타 전산 설비·시설물 등의 공사·이전·임차 관련 비용, 센서·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0.000

[별표 제2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문비 지급 기준

사전점검 수행인력 등급	자문비(심사비) 기준
수석 수행인력	기술사
선임 수행인력	특급기술자
수행인력	고급기술자

- ※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문비기준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정보보안 컨설팅비에 따르되 최대 지급액은 진흥원에서 정한 「수수료지급지침」에 따른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수행인력은 별도의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자기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진흥원의 수행인력
 - 참관 수행인력

정보보호 사전점검 확인증 확인증 번호 : 업체명: 대표자 : 주소 : 정보보호 사전점검 범위: 붙임: 정보보호 사전점검 결과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5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직인

종	성보보호 사전점검 확인증 추가 :	발급 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호기바그 기 ()		
추가발급 사유		
	위와 같이 정보보호 사전점검 확인증의 추가발	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	인터넷진흥원 귀중	

	~~~~~~~~~~~~~~~~~~~~~~~~~~~~~~~~~~~~~~	벙보보호 사전	!점검 :	학인증 변	- - - - - - - - - - - - - - - - - - -	서		
	업체명				사업자등	_ 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국문)						
	변경전	(영문)						
변경 내용		(국문)						
	변경후	(영문)						
변경사유								
위와 같이	기 정보보:	호 사전점검 확인증	· 변경을 신	<u>!</u>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대표자)			(서	]명 또는	: 인)
	한국인	민터넷진흥원	7	구중				

# [별지 제4호 서식]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신청서 (1/4)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회 사 명 회사주소	(우: - )		생년월일				)	사진
		이 메일								
신청사항		전화번호 신청 구분		휴대전화   □ 자격인증 □ 전문분야 변					<u></u> : 변경	
		최종학력	□ 고졸 □ 전문대졸			 대		석사		 ] 박사
학력사항		학사	전공			기간				
7777		석사	전공			기간				
		박사	전공			기간				
정보보호 사전점검 교육이수		교육기간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료증				증번호 -		
	자격증번호		자격증명/등급			취득일자			수여기	]관
자격사항 ※해당자에										
한함										
		초 거려	저ㅂ키스	초 1	3 71101	<u>π</u> -	   и и ÷	초 13 *	 7]] O]	
	NI -	총 경력	정보기술	_	년 개월 		보보호		총 년 :	
	No.	구분	기간		외	사명	-	부서		직책
	1	□정보기술 □정보보호	~ (년개	월)						
	2	□정보기술 □정보보호	~ (년개	월)						
경력사항 ※최근 10년 경력사항 기술	3	□정보기술 □정보보호	~ (년개	월)						
O TTO TE	4	□정보기술 □정보보호	~ (년개	월)						
	5	□정보기술 □정보보호	~ (년개	월)						
	* 칸	이 부족할 경우	- 추가 작성							

	(1)	개인별 전문분야 (복수 선택 가능, 우선순위 표기요망)		
대분류		소분류	순위	실무경력
		정보보호정책수립 및 조직구성		년
	정책, 조직 및	인적보안, 외부자 보안, 외부위탁관리		년
	인적보안	정보보호교육 및 훈련		년
관리적		국내외 표준 기준 및 법령		년
정보	위험관리	자산분류, 위험평가 수행, 대책 및 계획수립		년
보호	업무연속성관리	업무연속성 계획수립 및 시험, 유지관리		년
	침해사고대응	침해사고 대응계획 및 체계, 복구		년
	정보시스템 감사/감리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감사/감리		년
		네트워크 설계기술		년
	1-1 = 01 ⊐	라우팅 제어, 프로토콜 제어, 접근통제, 암호화, NAT, 운용관리(로그, SNMP, 설정도구)등 통신기술		년
	네트워크	라우터, 스위치(L2~L7), RAS, VPN, SSL, DHCP, 네트워크 감시 등 기기기술		년
		기타( )		년
	운영체제 및 시스템	OS 기본지식, 계정관리, 접근권한, 서비스관리, 로그관리, 패치, 보안 S/W 사용 등 유닉스/리눅스 시스템		년
		OS 기본지식, 계정관리, 접근권한, 서비스관리, 로그관리, 패치, 보안 S/W 사용 등 윈도우 시스템		년
		메인프레임 등 기타( )		년
		HTTP 프로토콜, 브라우저, SQL-Injection 등 Web 위협에 대한 대응책, SSL, CGI 보안 프로그래밍 등 Web 서비스		년
기술적 정보		부하분산, DNSSEC, 보안설정 등 DNS 서비스		년
보호	응용서비스	메일 프로토콜, 스팸대응, 웜/바이러스 필터링 등 메일 서비스		년
		DB 기본지식, 이중화, 데이터백업,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		년
		ERP, KMS, CRM 등 사내정보시스템		년
		분산시스템 등 기타( )		년
		FW 기본지식, 접근통제, 라우팅, 네트워크 정책설계, 구성(이 중화, 망분리, 로드밸런싱 등) 등 침입차단시스템		년
	<b>2</b> 11112	웜/바이러스 기본지식, 웜/바이러스별 감염 증상과 대책 등 바이러스 월		년
	정보보호 솔루션	IDS 기본지식, 방화벽 연동, 패턴 매칭 방법, 구성(에이전트 위치, 통합콘솔 등) 등 침입탐지시스템		년
		SecureOS 기본지식, 계정관리, 접근권한, 서비스관리, 로그관리, 패치 등 SecureOS		년
		기타( )		년

	(1) 개인	l별 전문분야 (복수 선택 가능, 우선순위 표기요망)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순위	실무경력
	취약성분석	사회공학적 방법, 스캔, Sniffing, DOS, Buffer Overflow, 웜/바이러스, 백도어 등 취약성 분석 및 점검		년
	보안 운영	통합관제(ESM, NMS 등), 망관리, 백업, 로그 분석, 모니터링, 패치, 문제해결(원인규명)		년
기술적 정보		IPSec, PPTP, L2TP, SSH, SSL/TLS, MPLS, IKE, S/MIME, PGP 등 보안 프로토콜		년
보호 (계속)		패스워드인증, 생체인증, 인증디바이스, 인증프로토콜, WEB인증, RADIUS, SSO 등 인증기술		띳
	기반기술	증명서 인증 및 실효, 신뢰모델, 기술 및 데이터방식, 인증센터 구축과 운영, 법적구조 등 PKI		년
		암호알고리즘, Key 관리, 암호방식 등 암호기술		년
		디지털서명, 디지털 봉투, 코드 서명		년
물리적	접근보안	출입 및 접근통제, 모니터링 등		년
정보 보호	시설관리		년	
개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취급자, 컨설턴트, 법률 담당, 소비자 민원 및 상담 등		년
시스템 7	개발 및 설계			년
	기타			년
	의 경력사항(N 족할 경우 별지	관련 경력기술 o.)에 대해 수행한 업무에 (1)에서 선택한 전문분야 관련 내용을 상세 기 사용	레히 기술	
No.		상세내용		
1				
2				
3				
4				
5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교육, 자격부여 및 관리, 자문료 지급, 사전점검 점검팀 구성
- ο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 자격경력, 발령사항, 기술실적사항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종료시까지
-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점검 수행인력 등록 및 위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격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필요시 학력,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위와 같이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정보보호 사전점검 자격 신청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활동에서 사용됩니다.

E-mail : PSP@kisa.or.kr, Fax : 02-405-5129

|주소 : (130-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6층 KISA 사전점검 담당자

# [별지 제5호 서식]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이지기를	성명			생년월	[일			
인적사항	주소			연락	허			
	전 근	무처 명			<u> </u>			
	근무	 기간	N 11	21				
	부터	까지	부서	직역	A   	담당업무		
_1_1.1.51								
경력사항								
근무년수		년 개월	초	종직위				
용도		정	보보호 사전	점검 수행	인력 자격 신	청		
		위와	· 같이 경력을 년 월		니다.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olτl	성	명	부서		연락처	비고		
확인자								
				'				

# [별지 제6호 서식] 상세 재직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회사명									
소속사항	부서			직위						
	근속기간		~	근무년수		년 개월				
	근무	기간	нл	<b>₹</b> ] 0]						
	부터	<i>까</i> 지	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령사항										
용도		정. 	보보호 사전점?	甘 수행인력 	자격 신청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	명	부서	연락	처	비고				
7 47										

#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실적증명서

	기술실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소속								
	수행	기간	क्रील ग्रील म	ririoi D					
	부터	까지	참여사업명	발주처		담당업무			
v1=1-1-1									
실적사항									
용도		정-	보보호 사전점검	i 수행인력 /	자격 신청				
		위와 같	날이 기술실적을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ālol <i>t</i> l	성	명	부서	연락	처	비고			
확인자									

		정보	보호	사전	점검 -	수행역	인력	자:	격 승	급	신청	청서		
	۲	성 명							생년	월일				
	2	두 소	(우:	-	)									
신청자	Ž	회 사 명												
인적사항	Ξ	티사주소	(우:	_	)									
	С	에 메일												
	7	전화번호							휴대	전화				
신청사항		등급			선임 수	∸행인	[력					] 수	석 수행인력	
		총계		회수					회		일수	`		일
	1	점검대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2	점검대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3	점검대상												
	J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4	점검대상												
	4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사전점검 경력사항	5	점검대상												
0 1 1 0	J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6	점검대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7	점검대상												
	,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8	점검대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9	점검대상												
	J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별지 제9호 서식]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 의견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 의견서

본인은 정보보호 사전점검 자격 심의회에 참석하여 자격심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신청자	의	결	의견
[ 건경자 	찬성	반대	의건

년 월 일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 참석자 (서명)

#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 결과서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 심의회 결과서			
신청자					
주소					
전문분야					
인증심사원 등급		□ 수행인력 □ 선임 수행인력 □ 수석 수행인력			
자격심의 회의 참석자		성명	의견	성명	의견
		□ 적 격 □ 부적격			
최종심의 의견					
위와 같이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 자격심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제 호

# 위 촉 장

성 명: ( . . )

분 야:

기 간: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사전점검 업무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사 전점검 수행인력 유지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인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인터넷진흥원장